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3. 11. 20.(월)
제413회 정례회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
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
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1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, “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-2
- 규 모 : 부지 3,305㎡, 건물연면적 2,565㎡ / 지하1층, 지상4층
- 주요시설
 - 대회의실 1, 중회의실 1, 소회의실 1, 사무실 13, 노동상담실 1
 - 프로그램실 1, 체력단련실 1, 휴게실 1, 다목적실 1, 창고 1, 기계실 1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
- 수탁기관 :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※ 現 노동자복지관 수탁기관 :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
(의장 강국모, '14. 7. 21 ~ '23 12.31.)
- 위탁방법 : 재계약(현 수탁자 재위탁 심사 선정)
- 사 업 비 : 92,799천원(도비 10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 주요사무
 -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·교육사업
 -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
 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체육·문화사업
 - 노동자 및 그 가족,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노동자복지를 위한 사업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가. 제출배경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“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,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북도 노동자 종합복지관 조례 제4조에서 3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
-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을 제출 하게 됨

나. 주요내용

○ 추진체계 및 절차

① 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	'23. 10월
② 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(11월 회기중)	'23. 11월
③ 기관선정	• 수탁기관 선정 - 방법 : 재계약 - 대상 : 현 수탁자	'23. 11월
④ 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- 구성 : 6~9명 정도 - 심사 : 공신력,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 등 - 선정 : 심사기준표 의해 평균 70점이상일 경우	'23. 11월
⑤ 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23. 12월
⑥ 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24. 1월

○ 추진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>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.

②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 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* 노동자종합복지관 : 4회차 계약('14년,'17년,'20년,'23년) 해당, **의회보고 대상**

○ 향후계획

-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3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3. 12월
- 수탁기관 사무편람 승인 : '23. 12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4. 1월 ~

다. 종합의견

- 최근 노동자복지개선, 갈등 조정 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노동자 복지지원이 중요한데 노동 관련 문제는 관에서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상호 보완함으로써 다변하는 노동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큼
- 노동자를 위한 교양·교육사업, 노동자의 고충상담, 교육 등을 위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함
-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없이 원활한 사업 목표달성을 착실히 이행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된바 본 동의안 취지에 따라 재위탁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